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05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
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장기봉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음
-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)
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‘행정부지사’에서 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’로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 9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체계로 전환하고, 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정무부지사 소관 업무 제외)’은 행정부지사 소관업무로 일원화했음
- 이어 같은 해 11월 27일 정무부지사의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 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경제관련 사무분장 범위를 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항·국회 등의 업무로 확정함
-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음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이 개정안의 안 제9조제1항은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개정하려는 것임
- 위 개정은 앞서 언급한 사무분장 범위의 확정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고 내용 또한 적절함
- 또한, 정무부지사가 아닌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

표현한 것은 차후 부지사 명칭 변경 등의 사정 발생 시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다음의 사항에 관해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설명이 필요함

- 1) 지난해 11월 27일 사무분장 범위가 확정되었으나, 조례 개정 없이 약 5개월간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⁶⁾
- 2) 또한, 현행 제9조제2항제1호⁷⁾에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부지사가 명시되어 있음
 - 위원회 구성원에 행정부지사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된다면, 위원회에 두 명의 부지사를 위원으로 구성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
 - 조례안 검토를 위해 관계 부서에 조례 개정 후 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행정부지사 대신 정무부지사가 위원장 및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항의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
 - 따라서 조례 내용의 정합성을 위해 제출된 안 제9조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제1호도 함께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

6) ① 사무분장 범위 확정 이후 2025년 1월·3월 임시회(제423회·제424회 임시회)에 제출했어야 했으나 지연 5개월이 지난 4월 임시회(제425회 임시회)에 제출한 사유

②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관리하는 행정국과 협의하여 종전처럼 정무부지사의 사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개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

7)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1.5., 2022.10.7.>

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

현행	개정안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	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보건복지국장,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(필요성)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,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범위 확정으로 조례의 위원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(정무부지사)로 개정하여 사무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
- (타당성) 또한, 차후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보다는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타당성이 있음
- 다만, 약 5개월간 개정을 서두르지 않은 점, 같은 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에 종전의 행정부지사가 포함된 것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점 등은 조례 내용의 정합성과 타당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해 보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수 정 안 요 지

가. 수정이유

-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조례 내용의 정합성을 위해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

나. 수정내용

- 제9조제2항제1호 중 “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함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- 「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수정안 포함)」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9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2.(화)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가. 제안이유

-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조례 내용의 정합성을 위해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제9조제2항제1호 중 “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함.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----- -.	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 2. ~ 9.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1. 보건복지국장----- ----- -----.
	③ ~ ⑦ (생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 ----- ----- ----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-----.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	1. 보건복지국장----- ----- -----.
2. ~ 9. (생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약칭: 자살예방법)

제10조의2(자살예방위원회)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5.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2.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-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「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*을 반영
 - * 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항·국회 등 업무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

○ 작성자

-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한 찬 오